

● 제295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556

### I. 조례안 개요

#### 1. 발의자 및 제안경과

- 가. 발 의 자 : 이영실 의원의 13명
- 나. 발 의 일 : 2020. 5. 25.
- 다. 회 부 일 : 2020. 5. 29.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현행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시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 비밀유지 의무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제안함.

## 나.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을 일부 변경 및 추가 신설함(안 제6조)
-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조례안의 개요

- 2010년 이후 서울시의 한부모가족비율 총구수 기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 중 저소득한부모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 〈연도별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연도	총가구수(A)	한부모가족(B)	비율(B/A)	*저소득한부모(C)	비율(C/B)
전국	2018	20,499,543	1,539,362	7.5%	209,389	13.6%
	2017	20,167,922	1,533,166	7.6%	222,136	14.5%
	2015	19,560,603	2,060,162	10.5%	223,574	10.9%
	2010	17,574,067	1,594,138	9.0%	-	
서울	2018	3,981,741	306,902	7.7%	34,824	11.3%
	2017	3,984,850	309,868	7.8%	36,178	11.7%
	2015	3,784,490	411,465	10.8%	39,912	9.7%
	2010	3,577,497	351,848	9.8%	32,079	9.1%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한부모 지원현황

\* 저소득한부모(C)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 시스템상 2012년부터 조회가능(서울시 2010년 이전은 자체 보유 자료에 근거)

- 이에 동 조례안은 취약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동시에 한부모가족들의 사기진작 및 시민 인식을 개선을 위한 기념일 지원과 낙인효과 등 사회적 차별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비밀 유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2 주요사항 검토

###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 (안 제6조)

- 개정안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기 추진 사업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하려는 것임.
- 안제6조제5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sup>1)</sup>에서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며, 같은조 제6호의 ‘미혼모·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및 제7호의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16.>

[본조신설 2011. 4. 12.]

사지원서비스'는 기추진 중인 사업임.

- 안 제6조제8호의 '위기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은 임신이나 출산, 양육을 해야하는 한부모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임신·출산·양육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아동과 한부모를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현행	개정안
<p>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6.·7. (생략)</p>	<p>제6조(지원사업)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u></p> <p>6. <u>미혼모·부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u></p> <p>7. <u>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u></p> <p>8. <u>위기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u></p> <p>9.·10.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p>

□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지원 (안 제9조의2 신설)

- 개정안에서는 2018. 1. 16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4<sup>2)</sup>에 따라 지정된 한부모가족의 날에 행사 등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에서 이미 시장에게 기념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u>&lt;신설&gt;</u>	제9조의2(한부모가족의 날)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전까지는 별도로 지정된 기념일이 없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정일인 10월 17일을 임의로 정해 행사 등을 추진해온 바, 한부모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 인식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6.]

□ 비밀 유지 의무 (안 제16조 신설)

- 개정안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대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한부모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등이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반 시에 구체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소 상징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나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p>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의식 개선과 한부모가족이라는 낙인이나 차별로부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